

#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937
----------	------

발의년월일 : 2009. . . .  
발 의 자 : 이민근 의원 외 5인

## 제안이유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내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보호자”, “종사자”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센터로 신고한 시설을 센터 사업 주체로 명시함(안 제4조).
-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외 지역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등으로 정함(안 제5조).
- 센터의 사업을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사업,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와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등으로 명시함(안 제6조).

-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함(안 제8조).
-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 시장은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센터의 장은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규정함(안 제 13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 「아동복지법」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제1항제11호
- 「아동복지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종사자”란 법 제1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할 책임이 있다.

제4조(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센터로 신고한 시설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 · 조손 · 소년소녀 · 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거주외국인 가정의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와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의 장은 이용 아동 중에서 장애 등으로 인해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이용기관(시설) 등 전문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운영비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센터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의원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존속기한 등)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 12. 31. 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비밀 준수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